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제2023- 24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직 종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1

2.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제출기한 및 방법 : 2023. 10. 16.(월) 18:00까지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장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주소: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2년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결격사유 확인서 1부(붙임 양식)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양식)
- 사진(반명함판) 1매 및 통장사본 1부(급여지급용 계좌)

3.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채용담당자(061-33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1

결격사유 확인서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확인자:　　(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첨자료 2

문화재청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고용노동부)」과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18.11.7.)」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5.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기간제/파견/용역/신규채용)로, 문화재청에서는 년 월 일 부터 근무를 시작(또는 시작 예정)하였다.

2-1. 본인은 (구직사이트/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지인 소개/친인척 소개/기타 사유)의 경로로 해당기관(업체)에 취업하였으며, 문화재청에(기간제/파견/용역/신규채용)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2-2. 본인은 ( ) 사유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하였다.

<< 작성예시 >>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
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

3.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 )촌 이내의 관계로,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3-1. (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확인자 : (서명/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입사방식, 문화재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별첨자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